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3

발의연월일: 2020. 6. 22.

발 의 자:서삼석·전용기·윤후덕

이동주・천준호・정정순

최종윤 · 서영석 · 김남국

소병철ㆍ허 영ㆍ신정훈

김승원 · 강득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,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있음.

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온실, 축사,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어민에 대 해서는 시행령 상에 수조만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시설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, 양어장으로 사용 하는 수조의 경우 설비규모와 취득비용에 있어 영세 자영어민에게 금 전적 부담이 있음.

이에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 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 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56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"자영어민 등"을 "자영어민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후계어업경영인"을 "후계어업경영인(이하 이조에서 "자영어민"이라 한다)"으로, "제2항"을 "제3항"으로, "토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"을 "토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라 공부상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자영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- 1. 수조
- 2. 창고(저온창고, 상온창고 및 어업용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)

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어업용 시설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법률 제16568호 법률 제1656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(자<u>영어민 등</u>에 대한 감면) 제9조(자영어민에 대한 감면) ① ① 어업(양식업을 포함한다. 이 하 같다)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 또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 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 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 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업경영인(이하 이 조에서 "자 영어민"이라 한다)----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· 양식업권, 어선(제2항의 어선은 -----제3항-----제외한다)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 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| 제67조에 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 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 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 지를 말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지를 말한다)----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

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②·③</u> (생 략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자영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시설을 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경우 해당 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.
- 1. 수조
- 2. 창고(저온창고, 상온창고 및 어업용기계보관용 창고만 해 당한다)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
- 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